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정이유

-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강화 등을 통한 원활한 국·도정 업무 추진을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안 제1조)
 - 충청북도 이·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등
- 이·통장 및 활성화 단체 등에 대한 정의 등 (안 제2조)
- 도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사업의 범위 (안 제3조)

4. 검토의견

-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등을 통하여 원활한 국·도정 업무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 안 제3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도정 홍보사업, 소양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정하였는데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같은 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규정한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를 대비한 행정재량적 성격의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자의적 판단으로 사업운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운영비 지원이 아닌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비용추계서를 보면 역량강화와 사기진작 사업에 연간 1억 원을 추계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함.

붙임 :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1부. 끝.

참고자료

광역시도 이·통장활동 관련 지원조례 현황

구분	조례명	공포일자
강원도	강원도 이·통장 지원 조례	2014. 5.16
충청남도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2015.10.30
전라남도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2015.12.10
경상북도	경상북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2015.11. 5
인천	인천광역시 통·리장연합회 육성 조례	2015.11.1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2012. 7. 2
제주	제주특별자치시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조례	2015.10. 6